

『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조상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코로나-19 바이러스 지역감염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고, 지역 내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로 인한 집단 감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이에 상위법인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

중단 및 폐쇄를 명령하는 권한이 시·도지사에게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. 따라서 이를 조례에도 반영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□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시장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한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